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해설(II)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최두선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해설

지난 6월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대한 조문별 해설에 이어서 이번호에 서도 제25조 부터 수의계약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

- 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다. <삭 제>

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삭제<개정 2007.9.20>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삭제<개정 2007.9.20>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영 제25조의 4호 라목 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접적지역 특수지역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란 사실상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으로휴전선 근방 북한지역과 접해있는 지역의 공사로서 경쟁이 곤란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다른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바 목의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나누어져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물품을 공급한자가 설치하거나 시험가동을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음식물처리 기계장치를 공급한자가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까지 한다면 책임소재도 분명해 지고 예산도 절감이 가능해 진다.

사목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동 조항은 우선 물품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이문제에 관하여는 그동안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역시 발주자가 최종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대체품이나 대응품이 없다는 문제는 실제로 납품된 물품을 다른 유사물품으로 사용을 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자치단체 가정복지과 S 공무원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나누어줄 실용신안 등록이 된 M이라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물품을 실제로 받을 소년·소녀 가장들의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M 물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대응품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 경우 S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을 것인가 . M 물품이 선호도가 가장 좋다는 조사결과와 다른 물품을 나누어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서를 만들어 계약부서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었다 .

아목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경우는 실제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 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제품이나 실용신안 등록제품은 1인뿐인 경우가 명백하다고 볼수 있으나 나머지 제품은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우선 이부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물품을 제조하여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는 앞의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다는 논리와 같은 논리가 성립 되어야 한다.



차목의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이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우선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들이 수의계약의 조건에 반영된 경우라고 할수 있다.

동 조항역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는 금년 8월7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계공모의 입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설계공모를 하면서 시공권 까지 주는 계약방식은 동 조항으로는 적용 되지 않는다.

카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이 경우는 우선 학술연구 용역의 구분부터 그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이 된다. 기술용역이란 공사와 관련된 타당성조사, 감리, 안전진단, 설계 등 시공과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일반용역은 학술연구 용역과 기타 학술연구 용역 외의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연구 용역의 정의를 보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에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문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물을 생산하는 용역을 말하나 일부지자체의 경우 학술연구 용역이 아닌 용역, 가령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단순용역을 학술연구 용역으로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하거나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학술연구 용역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은 하목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경우는 자치단체가 특정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장소를 임차 하여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2007년 9월 20일에 동조문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된다.

- (영)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07·9·20, 09·8·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규)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7·10·5>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재공고까지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재공고 입찰은 반드시 전국입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제한 입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제2항의 의미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초에 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자격 등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규칙 제32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수의계약을 하기는 하나 자격요건만큼은 입찰시 정한 조건을 갖춘 업체중에서 선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 제26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질의내용

00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중인 PSD제조구매 설치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계약건명 : 000 20개역 스크린도어(PSD) 제작구매 설치
- 계약기간 : '07. 9.14 ~ '09. 7.22
- 계약방법 : 2단계 경쟁입찰(최저가 입찰)
- 예정가격 : 30,000백만원
- 계약금액 : 21,814백만원(낙찰율 : 65%)
- 진행상황
 - 공사(납품)현장에서 인력을 철수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발주기관에서는 현재 계약해지를 검토중이며, 실 공정율은 20%에 불과함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이란 예정가격을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종전 계약금액을 감안하여 가격 협상을 통하여 발주청에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음은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제1항의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이나 그밖에 조건을 변경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 및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이란 예정가격을 의미하며 그 밖에 정한 조건이란 처음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이나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금이나 기한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7조의 규정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담당자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서 수의계약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 6호 라목의 경우에는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서의 수의계약, 제27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분할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라면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인에게 수의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개로 나누어서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공사에 대한수의계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은 전차(前次)공사를 시공한 사업자가 금차(今次)공사를 이어서 시공하는 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보통 하자구분공란 경우로서 수의계약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전차공사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당시 낙찰율을 금차공사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래의 경우를 말하며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계 약 금 액
원 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 외	①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07-9-20>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31>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을 결정한다.

영제30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은 우선적으로 2인 이상의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본원칙이 요구되고 있다. 2인이상 전자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의 87.745% (2천만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의 90%) 직 상으로 가장 근접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동 규정은 일단 지역을 최소 시군단위로 제한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인접 자치단체나 시도단위로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규격, 재질 또는 품질,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보유상황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시공여유율,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한 할수 있도록 하고있어 지역제한과 함께 다른 어느 하나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중복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2인 이상 전자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계약운영 요령상



의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낙찰 하한율에 직상으로 가장 근접한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포기를 한 경우에도 2 순위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결격사유

-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 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한편, 소액 수의계약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대상은 되지 않으나 1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액수의 전자견적서 제출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기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2)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항공, 버스임차, 숙박 포함 가능)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5인 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7)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수기(手技)로 견적을 받아야 하며 가격을 검토하여 수의계약 시담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① (규) 제33조(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가스·수도 등 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규칙 제33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생략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정보나 카다로그 등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영)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08-12-31〉

1.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서식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공개는 당해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사 업 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A)	계약금액 (B)	계약율(% (B/A)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 사 유	법령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시				
사업장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한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전자견적에 의한 경우등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 .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호에서도 계속하기로 하겠다. 

